|  |  |  |
| --- | --- | --- |
|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4호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방법>이 2015년 3월 19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졔닝(陳潔寧)  2015년 4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돌발 환경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돌발 환경사건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통제, 경감 및 제거하며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대중의 생명안전, 환경안전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긴급 대응법>, <국가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매뉴얼>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각 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업체· 사업체가 실시하는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통제, 긴급대응 준비, 긴급처치, 사후회복 등 업무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방법에서 돌발 환경사건이라 함은 오염물질 배출 또는 자연재해, 생산안전사고 등 원인으로 인해 오염물질 또는 방사성물질 등 유독· 유해물질이 대기, 수체, 토양 등 환경 매개체로 배출됨으로서 대중의 신체건강과 재산안전을 해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연적인 환경 품질 악화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를 취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을 지칭한다.  돌발 환경사건은 그 심각성에 따라 특별히 중대한 사건, 중대한 사건, 비교적 중대한 사건, 일반 사건 네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핵 시설 및 핵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핵 및 방사선 누출 사고로 초래된 방사선 오염 사건은 핵 및 방사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오염 날씨 대응 업무는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환경사건의 대외 긴급 통보 및 처치 업무는 국가의 국제협력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긴급대응을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돌발 환경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분류(分類) 관리, 등급에 따른 업무분장, 속지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긴급대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하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독촉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로 인접한 지역의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행정구역간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업무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돌발 환경사건을 방비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돌발 환경사건에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제6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규범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실시;  (2)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 보완;  (3)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 및 퇴치;  (4)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수립, 등록(備案) 및 예행연습;  (5) 환경 긴급대응 능력 보장 업무 강화.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체·사업체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 및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격려하여 대중의 돌발 환경사건 방비·대응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시켜야 분한다.  **제2장 리스크 통제**  **제8조** 기업체·사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리스크 예방 조치 및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기업체·사업체는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관련 요구사항 및 기술규범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전 항의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에는 유출물질, 소방용수, 오염우수(雨水) 등의 외부환경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집, 도류(導流), 차단, 오염감소 등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 제도를 수립하고 위험요소 점검·퇴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환경안전 위험요소를 제때에 발견 및 퇴치해야 한다.  발견 후 즉시 퇴치가 가능한 환경안전 위험요소의 경우 기업체·사업체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안전 위험요소를 퇴치해야 한다. 정황이 복잡하고 단기 내 퇴치가 어려워 비교적 중대한 환경안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환경안전 위험요소의 경우 위험요소 퇴치방안을 제정하고 정비·개선 조치, 책임, 자금, 기한 및 현장 긴급 대비책을 확실히 하여 지체없이 위험요소를 퇴치해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업무를 추진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 환경사건을 분석하고 지역 환경 리스크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기업체·사업체의 환경 리스크 예방 및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 업무에 대해 임의 추출 검사와 기습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대한 환경안전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유험요소의 정비·퇴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사회신용기록에 기재하고 업계 주관부서, 투자 주관부서,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관련 금융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긴급대응 준비**  **제13조** 기업체·사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결과 및 긴급대응 자원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을 수립하여 유형·등급별 관리의 원칙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제14**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돌발 환경사건 전문 긴급 대비책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긴급 대비책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수립업체는 예행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예행연습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제점 분석 결과와 예행연습 상황에 근거하여 긴급 대비책을 적시에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제16조** 환경오염이 대중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른 환경오염 공공 모니터링 조기경보 발표 및 긴급 대비책 가동을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돌발 환경사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12369' 환경제보 핫라인,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지역간 및 부서간의 환경사건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긴급대응 당직제도를 수립하고 긴급대응 당직 책임자와 긴급 연락자를 확정하여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지식 및 기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교육 기록을 작성하여 교육의 시간, 내용, 참가자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조건을 갖춘 시·현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긴급대응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업체·사업체는 환경 긴급처치·구조 능력 제고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긴급대응 능력 표준화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긴급대응 감측기기·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점 유역(流域) 지역의 수질·대기 돌발 환경사건 조기경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환경 긴급대응 물자 비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춘 지역은 환경 긴급대응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체·사업체는 필요한 환경 긴급대응 장비와 물자를 비축해야 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 및 보완해야 한다.  **제4장 긴급처치**  **제23조**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을 가동시켜야 하고 오염원 차단·통제 조치와 기타 필요한 피해확대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체없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체와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긴급처치 기간 기업체·사업체는 통일지휘에 따라야 하고 본 업체 및 긴급처치와 관련된 온전하고 정확한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긴급대응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하고 돌발 환경사건 관련 제반 증거를 보호해야 한다.  **제24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돌봘 환경사건 정보 보고방법>에 규정한 시한, 절차 및 요구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인근 행정구역이 돌발 환경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발생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인근지역의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인근지역 인민정부 통보를 건의해야 한다.  **제26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즉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오염물질 및 수량, 주변 환경 민감구역 등 상황을 초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27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긴급대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긴급처치 기간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사건 정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긴급처치방안 및 건의사항을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과 피해가 통제되었거나 제거된 후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근거하여 긴급처치 조치를 중지한다.  **제5장 사후회복**  **제30조** 긴급처치 업무가 끝난 후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적시에 긴급처치 상황을 총결 및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도출하여 상급 환겨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돌발 환경사건 영향 및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돌발 환경사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 성격을 확인하며 사건 책임을 규명하고 정비·개선 조치와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환경복원 업무계획의 작성에 참여해야 하고 환경복원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6장 정보 공개**  **제34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이 알기 쉽고 조회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본 업체의 환경 리스크 예방 업무 상황,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및 예행훈련 상황, 돌발 환경사건 발생 및 처치 상황, 정비·개선 요구 이행 상황 등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5조** 돌발 환경사건 발생 후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사건의 영향과 등급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판단하여 적시에 정보 발표를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총괄지휘 직책을 담당하였거나 돌발 환경사건 처치를 당담한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사태 발전과 긴급처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일적이고 정확하며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직책범위 내에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규정과 요구사항,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및 예행훈련 등 환경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돌발 환경사건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여 돌발 환경사건의 건수, 등급 및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긴급처치 상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 기업체·사업체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돌발 환경사건 발생을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법률·법규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비교적 중대, 중대, 특별히 중대한 돌발 환경사건 발생 후 기업체·사업체가 요구에 따라 조업 중단 조치, 배출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시설·설비를 차압·압수한다.  **제38조** 기업체·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업무를 실시하여 리스크 등급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환경 위험요소 점검·퇴치 업무를 실시지 아니하고 위험요소 점검·퇴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비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기급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교육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5)규정에 따라 필요한 환경 긴급대응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부칙**  **제39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办法**  环境保护部令第34号  《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办法》已于2015年3月19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6月5日起施行。  　　部长　陈吉宁  　　2015年4月1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预防和减少突发环境事件的发生，控制、减轻和消除突发环境事件引起的危害，规范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工作，保障公众生命安全、环境安全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相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业事业单位组织开展的突发环境事件风险控制、应急准备、应急处置、事后恢复等工作，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突发环境事件，是指由于污染物排放或者自然灾害、生产安全事故等因素，导致污染物或者放射性物质等有毒有害物质进入大气、水体、土壤等环境介质，突然造成或者可能造成环境质量下降，危及公众身体健康和财产安全，或者造成生态环境破坏，或者造成重大社会影响，需要采取紧急措施予以应对的事件。  　　突发环境事件按照事件严重程度，分为特别重大、重大、较大和一般四级。  　　核设施及有关核活动发生的核与辐射事故造成的辐射污染事件按照核与辐射相关规定执行。重污染天气应对工作按照《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等有关规定执行。  　　造成国际环境影响的突发环境事件的涉外应急通报和处置工作，按照国家有关国际合作的相关规定执行。  **第三条** 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工作坚持预防为主、预防与应急相结合的原则。  **第四条** 突发环境事件应对，应当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建立分类管理、分级负责、属地管理为主的应急管理体制。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对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日常工作实施监督管理，指导、协助、督促下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做好突发环境事件应对工作。  **第五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本级人民政府的要求，会同有关部门建立健全突发环境事件应急联动机制，加强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  　　相邻区域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开展跨行政区域的突发环境事件应急合作，共同防范、互通信息，协力应对突发环境事件。  **第六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相关法律法规和标准规范的要求，履行下列义务：  （一）开展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  　　（二）完善突发环境事件风险防控措施；  　　（三）排查治理环境安全隐患；  　　（四）制定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并备案、演练；  　　（五）加强环境应急能力保障建设。  　　发生或者可能发生突发环境事件时，企业事业单位应当依法进行处理，并对所造成的损害承担责任。  **第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业事业单位应当加强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的宣传和教育，鼓励公众参与，增强防范和应对突发环境事件的知识和意识。  **第二章 风险控制**  **第八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有关规定开展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确定环境风险防范和环境安全隐患排查治理措施。  **第九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的有关要求和技术规范，完善突发环境事件风险防控措施。  　　前款所指的突发环境事件风险防控措施，应当包括有效防止泄漏物质、消防水、污染雨水等扩散至外环境的收集、导流、拦截、降污等措施。  **第十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建立健全环境安全隐患排查治理制度，建立隐患排查治理档案，及时发现并消除环境安全隐患。  　　对于发现后能够立即治理的环境安全隐患，企业事业单位应当立即采取措施，消除环境安全隐患。对于情况复杂、短期内难以完成治理，可能产生较大环境危害的环境安全隐患，应当制定隐患治理方案，落实整改措施、责任、资金、时限和现场应急预案，及时消除隐患。  **第十一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本级人民政府的统一要求，开展本行政区域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工作，分析可能发生的突发环境事件，提高区域环境风险防范能力。  **第十二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企业事业单位环境风险防范和环境安全隐患排查治理工作进行抽查或者突击检查，将存在重大环境安全隐患且整治不力的企业信息纳入社会诚信档案, 并可以通报行业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证券监督管理机构以及有关金融机构。  **第三章 应急准备**  **第十三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在开展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和应急资源调查的基础上制定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并按照分类分级管理的原则，报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四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突发环境事件专项应急预案，制定本部门的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和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五条** 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制定单位应当定期开展应急演练，撰写演练评估报告，分析存在问题，并根据演练情况及时修改完善应急预案。  **第十六条** 环境污染可能影响公众健康和环境安全时，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建议本级人民政府依法及时公布环境污染公共监测预警信息，启动应急措施。  **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本行政区域突发环境事件信息收集系统，通过“12369”环保举报热线、新闻媒体等多种途径收集突发环境事件信息，并加强跨区域、跨部门突发环境事件信息交流与合作。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环境应急值守制度，确定应急值守负责人和应急联络员并报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  **第十九条** 企业事业单位应当将突发环境事件应急培训纳入单位工作计划，对从业人员定期进行突发环境事件应急知识和技能培训，并建立培训档案，如实记录培训的时间、内容、参加人员等信息。  **第二十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定期对从事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工作的人员进行培训。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以及具备条件的市、县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设立环境应急专家库。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和企业事业单位应当加强环境应急处置救援能力建设。  **第二十一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环境应急能力标准化建设，配备应急监测仪器设备和装备，提高重点流域区域水、大气突发环境事件预警能力。  **第二十二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建立环境应急物资储备信息库，有条件的地区可以设立环境应急物资储备库。  　　企业事业单位应当储备必要的环境应急装备和物资，并建立完善相关管理制度。  **第四章 应急处置**  **第二十三条** 企业事业单位造成或者可能造成突发环境事件时，应当立即启动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采取切断或者控制污染源以及其他防止危害扩大的必要措施，及时通报可能受到危害的单位和居民，并向事发地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应急处置期间，企业事业单位应当服从统一指挥，全面、准确地提供本单位与应急处置相关的技术资料，协助维护应急现场秩序，保护与突发环境事件相关的各项证据。  **第二十四条** 获知突发环境事件信息后，事件发生地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规定的时限、程序和要求，向同级人民政府和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  **第二十五条** 突发环境事件已经或者可能涉及相邻行政区域的，事件发生地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相邻区域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并向本级人民政府提出向相邻区域人民政府通报的建议。  **第二十六条** 获知突发环境事件信息后，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立即组织排查污染源，初步查明事件发生的时间、地点、原因、污染物质及数量、周边环境敏感区等情况。  **第二十七条** 获知突发环境事件信息后，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突发环境事件应急监测技术规范》开展应急监测，及时向本级人民政府和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监测结果。  **第二十八条** 应急处置期间，事发地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组织开展事件信息的分析、评估，提出应急处置方案和建议报本级人民政府。  **第二十九条** 突发环境事件的威胁和危害得到控制或者消除后，事发地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的统一部署，停止应急处置措施。  **第五章 事后恢复**  **第三十条** 应急处置工作结束后，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总结、评估应急处置工作情况，提出改进措施，并向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  **第三十一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部署下，组织开展突发环境事件环境影响和损失等评估工作，并依法向有关人民政府报告。  **第三十二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开展事件调查，查清突发环境事件原因，确认事件性质，认定事件责任，提出整改措施和处理意见。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参与制定环境恢复工作方案，推动环境恢复工作。  **第六章 信息公开**  **第三十四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采取便于公众知晓和查询的方式公开本单位环境风险防范工作开展情况、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演练情况、突发环境事件发生及处置情况，以及落实整改要求情况等环境信息。  **第三十五条** 突发环境事件发生后，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认真研判事件影响和等级，及时向本级人民政府提出信息发布建议。履行统一领导职责或者组织处置突发事件的人民政府，应当按照有关规定统一、准确、及时发布有关突发事件事态发展和应急处置工作的信息。  **第三十六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职责范围内向社会公开有关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的规定和要求，以及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演练情况等环境信息。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突发环境事件进行汇总分析，定期向社会公开突发环境事件的数量、级别，以及事件发生的时间、地点、应急处置概况等信息。  **第七章 罚 则**  **第三十七条** 企业事业单位违反本办法规定，导致发生突发环境事件，《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等法律法规已有相关处罚规定的，依照有关法律法规执行。  　　较大、重大和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发生后，企业事业单位未按要求执行停产、停排措施，继续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对造成污染物排放的设施、设备实施查封、扣押。  **第三十八条** 企业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一）未按规定开展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工作，确定风险等级的；  　　（二）未按规定开展环境安全隐患排查治理工作，建立隐患排查治理档案的；  　　（三）未按规定将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的；  　　（四）未按规定开展突发环境事件应急培训，如实记录培训情况的；  　　（五）未按规定储备必要的环境应急装备和物资；  （六）未按规定公开突发环境事件相关信息的。  **第八章 附 则**  **第三十九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四十条** 本办法自2015年 6月5日起施行。 |